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홍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50

발의연월일: 2020. 7. 8.

발 의 자:김홍걸·김경만·이상헌

김원이 · 안규백 · 김교흥

임오경 · 한병도 · 신정훈

황운하 • 양경숙 • 박영순

임호선 · 이학영 · 윤후덕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·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통해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. 또한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·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의기구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협의와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·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하고,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5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·협력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 북교류·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「남북협력기금법」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·협력을 증진하고, 관련 정책을 협의·조 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4조의2(지방자치단체 남북교
	류·협력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
	체는 남북교류·협력을 위하여
	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	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력
	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
	에 「남북협력기금법」에 따른
	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
	<u>다.</u>
	③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·
	협력을 증진하고, 관련 정책을
	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
	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
	정책협의회를 둔다.
	④ 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
	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